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- 국립환경과학원

업무협력 협약서

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국립환경과학원(이하 '양 기관'이라 한다)은 동물질병 연구·조사사업을 통한 국내 질병방제 및 야생동물·가축 등의 보호·보전을 위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(목적)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조류인플루엔자.광견병 등 야생동물과 가축질병이 관련된 연구·조사사업 분야에 상호 협력함으로써 관련 생물종의 보호.보전 및 가축에서의 질병방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기본원칙)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상대기관의 제반 규정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3 조(협력분야)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.

가.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방지를 위한 정보교류 등 협력에 관한 사항

나. 야생동물과 가축질병에 대한 공동연구·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력

다. 가축 살처분 사체 매몰처리 및 환경영향 평가 등에 관한 연구

라. 연구원의 인적교류 및 학술정보 자료의 상호 이용과 교환

마. 기타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공동연구.조사 협력

바. 양 기관의 업무협력을 위한 업무협의체 구성 운영

제 4 조(비밀유지) 양 기관은 협력과정을 통하여 인지한 상대기관의 업무내용이나 이에 관련된 비밀을 요하는 사항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언론공개, 학술지게재 및 학술회의 등에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.

제 5 조(조항 수정 및 기타) 본 협약서는 상호합의하에 수정할 수 있으며 본 협약서의 해석상에 이의가 있거나,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 6 조(협약서 효력발생 및 폐기) 이 협약서의 효력은 "양 기관"의 장이 서명한 날부터 5년간 유효하며 향후 합의 후에 갱신할 수 있다. 또한 만료 30일 전까지 양 기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이 양해 각서는 5년간 자동으로 연장된다. 또한 이 협약서는 약정파기에 대한 양 기관의 합의가 있을 시에는 그 즉시, 한 기관의 일방적인 통보가 있을 시에는 그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.

2011년 12월 02일

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	인천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
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	**국립환경과학원**
본부장 박 용 호	**원 장 박 석 순**